

형사소송법(7급)

(과목코드 : 133)

2026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경우 직권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 ③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된 경우 또는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 ④ 원칙적으로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경우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하지만,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2.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④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의 경우,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3. 현행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인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②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 ③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이때 ‘즉시’는 체포 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4. 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5.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ㄴ.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ㄷ.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한 경우
 ㄹ.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ㅁ.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ㅁ

6.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②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한 경우, 해당 사건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는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

7.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③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어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④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가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8.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는 일차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 ③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그 하자는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
- ④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7일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참여재판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9.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할 필요는 없다.
-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하지 않다.
- ④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0.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 ②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더라도, 이는 유죄의 증거로 불충분하다.
- ④ 보강증거는 증거가치에 있어서 자백과 밀착된 증거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11. 비상상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비상상고의 목적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 ② 비상상고의 이유인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는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③ 단순히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 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가 허용된다.
- ④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12. 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 ② 즉시항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③ 항고의 제기가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13. 다음 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검사
- ㄴ. 사기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
- ㄷ. 상해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 ㄹ. 폭행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배우자
- ㅁ. 살인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직계친족
- ㅂ. 절도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제자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ㄱ, ㄴ, ㄹ, ㅁ, ㅂ
- ③ ㄱ, ㄴ, ㄷ, ㅁ, ㅂ
- ④ ㄴ, ㄷ, ㄹ, ㅁ, ㅂ

14.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② 약식절차에서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있다.
- ③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④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②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다.
- ④ 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개별적·순차적으로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의 형제자매도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문시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7.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그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의 공판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8. 다음 중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거부하더라도 강제 연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동행 과정에서 화장실로 따라가 감시한 경우
- ㄴ. 임의동행된 후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에서 나가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한 경우
- ㄷ. 임의동행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서에서 나가려는 운전자를 경찰관이 제지한 경우
- ㄹ. 음주측정을 위하여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 받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순찰차에 탑승 후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한 바 있으나, 그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경찰서에 빨리 가자고 요구한 경우
- ㅁ.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19.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제시되어야 하나,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도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압수당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겉표지만 보여 주었다하더라도, 그 후 변호인이 피의자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다면 위 압수처분의 위법성은 치유된다.
- ③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의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영장에 기재된 해당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의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
- ④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없다.

20.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고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 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변호인이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 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 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1.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라도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 ③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 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신문에서도 유도 신문이 허용된다.

22.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②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는 없다.
- ③ 공동피고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경우, 반드시 그 자백을 전부 믿어 공동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거나 그 전부를 배척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 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 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 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3.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 ④ 지방법원판사는 증거보전의 청구가 부적법 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4.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당사자 능력의 존부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 ② 피고인은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는 할 수 없다.
- ③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내려져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는 대표 이사가 있는 한 그 대표이사가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인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인 정리회사의 대표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부담 하던 형사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25. 군(軍)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 하여야 한다.
- ②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가 군무 이탈자 복귀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령위반죄로 처벌하는 경우 복귀명령은 군무이탈자에 대하여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③ 압수·수색영장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이상 신분적 재판권에 관하여 「군사법원법」 제2조가 정한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닌 사람이 소유·소지·보관하고 있는 물건도 해당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압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상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 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 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